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식품등의표시·광고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·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6. 5. 15. ~ 7. 14.)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「약사법」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·신고된 의약품의 명칭(제품명 또는 한약의 처방명 등을 포함한다)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·광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183